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30
----------	-------

발의연월일 : 2025. 10. 17.

발 의 자 : 이인선 · 김기웅 · 김위상
나경원 · 박성훈 · 신성범
윤한홍 · 이달희 · 정동만
최수진 · 한지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석화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진출 등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 과세시기를 유예해 주는 특례만을 두고 있고, 사업재

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석화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향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속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5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⑤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를 각각 감면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 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 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 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를 각각 감면한 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 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 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 ----- ----- ----- -----.